



제 429회 국회 (정기회)
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
수산업 · 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학습기회 확대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〉
■ 정부 제출(의안번호 제2213430호)

2025. 11.
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
전문위원 김 성 완

목 차

I. 제안경위	1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. 검토의견	2
1. 학습기회 확대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	2
[참고자료]	5

I . 제안경위

1. 제안자: 정 부
2. 제안일: 2025. 10. 1.
3. 회부일: 2025. 10. 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습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대상에 어촌지역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1항제3호).

Ⅲ. 검토의견

1. 학습기회 확대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

가. 개정안의 요지

□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어촌지역의 학습기회 확대, 교육환경 개선 등의 지원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1항제3호).

[표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8조(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)	제38조(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어촌지역 <u>학생</u> 의 학습기회 확대,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어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	3. ----- <u>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</u> 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)----- 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
나. 검토의견

- 현행법은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① 어촌주민의 소득 증대, ② 생산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역 특산물 생산·판매 및 주거환경 개선, ③ 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 확대, 어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, ④ 어촌주민 주거환경 개선, 의료서비스 확충, 문화생활 증진 등의 정책을 수립·시행토록 하고 있음(§38①).

현행법은 ③ 학습기회 확대 등의 지원 대상을 ‘학생’으로 한정하고 있어,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음.¹⁾

-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르면, ‘학교 밖 청소년’은 초·중학교 취학의무를 유예하였거나, 초·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한 청소년,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·퇴학·자퇴한 청소년 등을 말하며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§2-2.),²⁾ 2023년 기준 16만 6,500여 명으로 추정됨.

현행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,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·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(§3①), 상담지원(§8), 교육지원(§9), 취

1) 법제처 보도자료,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욱 두텁게 보장합니다, 2025. 9. 30.

2)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함(「청소년 기본법」 §3-1.)

업지원(§10), 자립지원(§11)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에 명확히 포함하려는 것으로,

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단절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특히 어촌지역은 일반지역에 비해 교육·복지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.

- 참고로 현행 법률 중에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3조에 학교와 청소년단체, 학생과 청소년(학교 밖 청소년 포함)을 열거하여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.

[유사 입법례] 문화예술진흥법

제13조(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·청소년단체 및 직장의 학생·청소년(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직원, 그 밖의 종업원의 정서와 교양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·청소년단체 및 직장에 학생·청소년·직원,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하나 이상 두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

문 의 처

02)6788-5422

참 고

학교 밖 청소년 차별 완화를 위한 법률 정비

연번	소관 부처	정비대상 법률		정비 내용
1	농림축산 식품부, 해양수산부	농어업고용인력 지 원 특별법	제11조 제1항· 제2항	(제1항)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 이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 사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 가하여 규정함. (제2항) 농어업체험사업에 참가하는 학교 등 뿐만 아니라 ‘청소년단체’에도 비용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.
2	농림축산 식품부	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	제53조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 이 농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3	농림축산 식품부	동물보호법	제4조제4항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 이 동물보호교육 대상으로 추 가하여 규정함.
4	특허청	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	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	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과 같 이 발명교육 지원 대상으로 추 가하여 규정함.
5	특허청	발명진흥법	제6조제2호, 제27조제2항, 제55조제3항 제7호	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과 같 이 발명교육 경비 지원 대상 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6	산업통상 자원부	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	제24조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 이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 램 등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7	해양수산부	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	제38조제1항 제3호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 이 어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.
8	산림청	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 한 법률	제4조제2항 제6호가목	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 밖 청소 년의 교육 및 놀이가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.
9	과학기술 정보통신부	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	제21조제3호	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같이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함.

자료: 법제처